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6. 2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· 복지증진, 취약계층에게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협동 조합임으로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2,500원 미만인 경우 40,200원으로 감면하는 조항 신설 (안 제9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하여登記할 때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고,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취약계층¹⁾에게 복지·의료·환경 등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,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등 주로 공익적 비영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- 따라서,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면조항 신설은 타당해 보임.
- 또한, ‘사회적 협동조합’ 과 성격이 유사한 ‘사회적 기업’ 의 경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50%, 등록면허세 50%, 재산세 25%를 감면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, 세제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감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됨.(※조합과 기업 비교표 첨부)
- 아울러 ‘사회적 협동조합’ 등록면허세 경감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감 규정이 아니

1)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북한이탈주민, 가정 폭력피해자, 한부모가정, 결혼이민자, 갱생보호대상자 등

고 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임.

- 현재, 영등포구 소재 ‘사회적 협동조합’ 은 7개소이며, 사업 초기단계로 대부분 출자금의 규모가 영세하여 등록면허세 경감(112,500원 ⇒40,200원)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, 감면에 따른 구 세입 감소는 크지 않을 것임.

(단위:천원)

연번	소재지	법인명	설립일	자본금
1	한국금속스크랩리사이클	영등포동8가	2014.8. 7	10,000
2	서울의료복지	대림3동	2013.9.16	80,050
3	아이쿱	영등포본동	2013.4.25	92,000
4	미래환경	당산동6가	2013.4. 2	37,000
5	글로벌시민양성	여의동	2013.3. 6	10,000
6	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	여의동	2013.5.14	7,000
7	소셜영상홍보공작소	양평동5가	2013.6.19	8,000

※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본금의 1,000분의 2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〈붙임〉

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교표

구 분	사회적 협동조합	사회적 기업
설립근거	협동조합 기본법	사회적기업 육성법
조직형태	비영리 법인	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, 비영리 민간단체 등
의사결정	조합원1인당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	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
인가권자	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	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
정 의	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	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
주된 사업	○ 취약계층에게 복지·의료·환경 등 사회서비스 제공 ○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	○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
세재혜택	○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경감	○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경감 ○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100분의 50경감 ○ 재산세 100분의 25경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4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지증진, 취약계층에게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에 대한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 세액이 112,500원 미만인 경우는 40,200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 (안 제9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28조 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합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의견 없음)

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 없음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6.4.28 ~ 2016.5.18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제9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<u>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</u> <u>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</u> <u>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</u> <u>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</u> <u>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</u> <u>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.</u>